지방정부 노동정책으로서 생활임금 현황과 과제
- 서울지역 생활임금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Ⅰ. 문제의식 - 지자체 노동정책으로 저임금 해소 실험

○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시급 6,030원은 '괜찮은' 혹은 '적정한' 임금일까. 2016년 5월 서울시민(1천명 대상) 최저임금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됨. 76.2%나 되는 시민들이 최저임금이 낮다고 응답했음. 예상 밖의 결과였지만 우리들의 시선(lens)을 조금만 돌리면 이해가 됨. 미국은 2020년까지 15달러(1만7천원)로, 영국은 9파운드(1만5천원)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있음. 독일은 2017년 8.8유로의 최저임금을 발표한 상황임.

○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였지만, 내년 법정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결정됐음. 반면 미국이나 영국은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생활임금' 논의가 더 활발함. 2016년 9월 현재 영국에서는 약 2,685개의 기업에서 생활임금 도입을 결정하고 인증, 시행 중임. 인터넷 구글(Google)에 검색하면 'living wage(생활임금)' 관련 내용이 약 352만개, 'minimum wage(최저임금)'이 약 3,630만개 정도 됨. 그만큼 최저임금은 보편적 제도이지만, 생활임금은 이제 막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음.

○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영국은 2005년 런던에서 도입했음. 우리나라는 서울시나 경기도 등의 지자체들이 모범 사용자 역할을 다하고, 낮은 최저임금을 견인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1] 2016년 9월 현재 약 66곳의 지자체가 조례에 의해 시행 중임.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최저임금보다 20% 정도 높은 상황임. 아직 공공부문 즉, 시청이나 구청 등에서 저임금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다 보니 아는 이들이 많지 않음. 통상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서 임금' 혹은 '기본적인 욕구를 포함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임금' 정도로 정의됨.

---

1) 2016년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분석 결과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겨우 시급 7천원 이하를 받고 있고, 10명 중 1명은 몇 년째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고 있음.

○ 사실 생활임금이 처음 시작된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 그 역사적 배경은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감. 산업화 초기 저임금과 착취노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고,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었음. 이런 의미에서 생활임금은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의 근본적 물음을 던짐. 비정규직 비율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깝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저임금 계층이나 임금 불평등이 미국 수준으로 심각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 때문임.

○ 해외 지자체 노동정책은 지역 차원의 포괄적 노동정책과 각 영역별 주요 의제 차원의 노동정책(고용 및 일자리, 취약계층, 최저임금, 생활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지자체 조례나 제도로 운영되는 노동정책과 민간단체와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 진행되는 일자리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우리나라 주요 지자체 노동정책은 주로 일자리 정책을 제외하면 생활임금 정도의 노동정책과 보호&지원 조직 설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2014년부터 우리나라 지자체 생활임금제도는 대표적인 사회정책 성격으로,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영미식 나라(LMEs)들에서 지방정부가 저임금 해소 정책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

일반적 노동정책	의제별 노동정책	보호&지원 조직
• 독일 뮌헨, 함부르크 → 취약계층 → 이주노동, 한부모 가족 • 독일 브레멘 • 미국 위스콘신 → 지역 일자리 창출 →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 미국, 영국 → 생활임금 • 핀란드,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 기본소득 • 독일 브레멘, 볼스부르크 • 이탈리아 보첸, 프랑스 파리 • 스웨덴 예테보리 →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	• 오스트리아, 독일 → 노동자회의소 • 영국 → 민중의 집 • 미국 → 노동자센터

○ 이처럼 생활임금과 관련된 쟁점과 문제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사례를 볼때 지난 20여 년간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결합하여, 사회운동적 성격으로 제기한 생활임금은 조례와 정책으로 반영된 성과는 과소평가 할 수 없음. 따라서 이 글은 국내 생활임금 도입과 논의 배경, 진행 과정 및 쟁점을 서울지역 및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의 생활임금 조례, 결정 기준 및 방식, 적용대상 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Ⅱ. 국내외 지자체 생활임금 도입과 현황

1. 해외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 미국, 영국[2)]

○ 저임금 해소를 목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작된 생활임금(living wage)은 조례와 정책(행정명령)으로 각 나라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지자체 노동정책 중 하나임. 최근에는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으로의 생활임금 확산이 주요 대학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3)]

- 미국 : 1994년 미국 매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시민사회단체 요구 시작
- 영국 : 2001년 런던에서 시민사회단체 요구 시작, 2016년 법제화
- 한국 : 적용 기준(원칙)과 대상(범위), 금액 등 다양한 형태
  △부천 모델, △서울 모델, △서울 성북/노원/광주 광산 모델
  △성남 모델, △아산 모델

○ 한편 최근에는 사회정책의 하나로 생활임금 이외에 기본소득이 유럽, 미국, 인도, 브라질 등 몇몇 나라들에서 도입·검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성남시 '청년배당'은 부분기본소득(basic income)의 한 형태(부분기본소득)로 볼 수 있음.

〈표 2-1〉 주요 국가별 기본소득 도입 검토 현황과 내용

국가	주요 도입 논의 내용
핀란드	중앙정부 기본소득 도입 검토. 2016년 하반기 실험 모델 결정 뒤, 2019년까지 실험 모델 시행 완전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등 4개 방안 검토 중(매달 800유로, 한국 100만원 상당 전 국민 지급 → 기존 복지 혜택 일원화 내용 검토)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등 지방정부가 논의 주도, 980달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노동 강제하는 등 4가지 실험군으로 나눠 기본소득과 노동참여율의 상관관계 등 분석 중
스위스	2016년 6월 기본소득 도입 여부 국민투표(2016.6.5 부결 76.9%) 국민투표안은 모든 성인에게 월 2,500 스위스 프랑(300만원 상당)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월 625스위스 프랑(80만원 상당) 지급 내용
영국	노동당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구상 중, 싱크탱크인 왕립예술협회는 25-26살 사이 모든 시민한테 연 3,692파운드(600만원 상당) 또는 월 308파운드(50만원) 지급하는 기본소득안 제안
브라질	2004년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

2) 해외 주요 생활임금 도입 배경, 쟁점 등은 김종진(2015), 「생활임금 논의 의미와 사회적 시사점 :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의 물음」, 《노동리뷰》,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5~15쪽을 참조할 것.

3) 유엔(UN) 산하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최저임금이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정의하는 반면,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음.

	모든 브라질 시민과 5년 이상 브라질에 거주한 외국인 대상으로 지급 내용
미국 알래스카	석유 시추 통한 수익의 25%~50% 적립하는 영구 기금 조성. 1년 이상 알래스카 거주민에게 기금 운영 수익금 배당
나미비아	2007년~2009년 '오미타라'주민 930명, 매달 100나미비아 달러(15,000원) 지급
인도	2012~2014 마다아프라데시 주민 6,000여명, 매달 300루피(5,000원) 지급
한국	* 성남시 청년배당(19세~24세) 성남 거주 미취업 청년(월 12만5천원)

자료 : 김은표(국회입법조사처, 2016), 한겨레(2016.6.6.) 내용 재구성.

가. 미국 생활임금

○ 사실 생활임금운동은 1994년 미국 볼티모어(Maryland 주 Baltimore시)의 BUILD라는 단체가 최대 공무원 노조인 AFSCME와 연대하면서 시작된 것임. 이들은 최저임금으로는 전일제 노동을 하더라도 4인 가족의 공식적인 빈곤선조차 넘어설 수 없는 상황에 주목하며, '최저임금'과는 구별되는 '생활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음. 당시 생활임금운동의 목적은 보다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었음.

○ 이를 위해 노동자와 지역단체, 그리고 종교단체의 연대를 통해, 임금을 '노동력에 대한 교환 가치' 이상의 '윤리적이고 사회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재구조화한 것임. 생활임금제도는 노동조합과 지역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연합하여 추진한 캠페인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며, 조례를 통해 시(city), 군(county), 주(state)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음.

나. 영국 생활임금

○ 영국 런던은 다른 지역보다 주거, 보육비 등 생활비가 매우 높아 국가 최저임금의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는 반면 소득 하위 4분위에 속하는 가구 비중이 26%로 잉글랜드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 시민권의 보장이 주거, 의류, 식료품 지원이 이루어지듯이 생활임금도 시민권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었고 그 운동의 결실로 실제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 시행되기에 이르렀음.

○ 2006년부터 런던의 최대 고용주인 지방자치단체인 광역런던기구(Greater London Authority, GLA)가 생활 임금제 시행에 앞장서고 있음. 광역런던기구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12년 광역런

던기구의 위탁계약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노동자 약 3,400명이 생활임금 적용 혜택을 받고 있음(GLA Economics, 2012). 2016년 4월 영국은 법정생활임금이 제정되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활임금의 확장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임.

〈표 2-2〉 주요 나라별 생활임금 제도화 및 유형 비교

	지표	미국	영국	한국
제도 운동 성격	제도화	조례 혹은 행정명령 생활임금기구 구성	행정명령 생활임금재단 구성	조례 혹은 행정 명령 생활임금위원회
	적용대상	공공 직접고용(O) 공공계약 및 보조기업(O) 순수 민간기업(X)	공공 직접고용(O) 공공계약 및 보조기업(O) 순수 민간기업(O)	공공 직접고용(O) 공공계약 및 보조기업(△) 순수 민간기업(X)
	운동 주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결합 →공공정책→시민사회& 공공 거버넌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결합 →공공정책→시민사회& 공공 거버넌스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결합 →공공정책 주도
생활 임금 설정	임금 수준	지역별 다양 (최저임금과 3달러 차이)	런던과 런던 이외 지역 (최저임금과 2파운드 차이)	지역별 다양 (최저임금과 1천원 차이)
	산정 기준	지출 생활비용 고려 가구원 수 고려	지출 생활비용 소득 고려 가구원 수 고려	도시 물가 반영
	가구원 수	다양한 가구	다양한 가구	(실질적) 1인 노동자

출처: 김종진(2015)

2. 국내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정책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과 함께 생활임금(a living wage)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 지역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2013년 12월 부천시에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2014년 8월), 서울(2015년 2월) 등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 2016년 9월 10일 기준 전국적으로 66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조례가 시행 중임.

○ 국내에서는 노동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이 2007~2008년 생활임금 캠페인을 벌이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음. 이후 한국노총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 후보에게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제안하였고, 또한 2012년 총선과정에서 민주통합당과 약속했던 노동복지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활임금을 첫 번째 실행과제로 제기했음. 한편, 참여연대에서는 2012년 핵심과제로 생활임금을 선정하였고, 부천시에서는 2012년 4월 부천시 생활임금조례제정추진위원

회를 구성한 것이 시초임.

〔그림 2-1〕 국내 전국 생활임금 조례 제정 현황(2016.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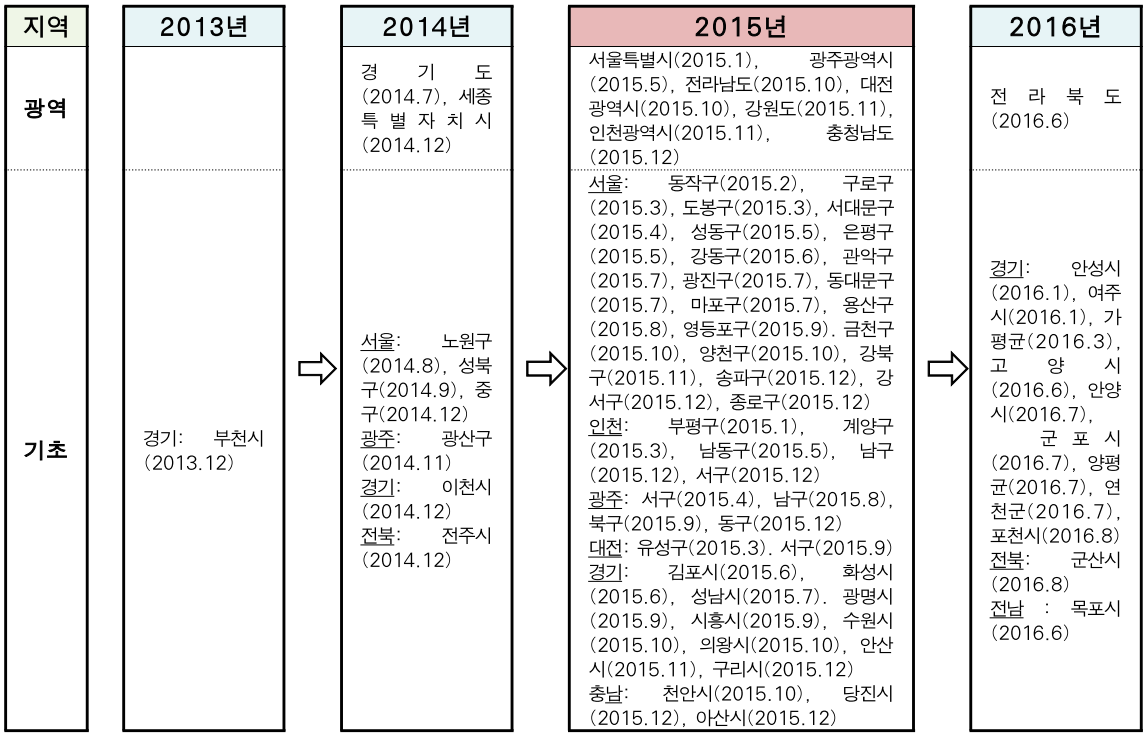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생활임금 조례 검색(접속일 : 2016.9.10)

〈표 2-3〉 서울지역 생활임금 조례 발의 주체와 제정 시기

구분	의원 입법	(제정시기)	행정부 입법	(제정시기)	행정 명령	(도입 시기)
서울시	○	2015.1.2				
종로구			○	2016. 1. 1		
중구	○	2014. 12.				
용산구	○	2015. 8. 7				
성동구			○	2015. 5.21		
광진구	○	2015. 7. 10.				
동대문구			○	2015. 7.30		
중랑구	미제정					
성북구			○	2014. 9.11	○	2013.1
강북구			○	2015.11. 6		
도봉구			○	2015. 3.12		
노원구			○	2014. 8.18		
은평구			○	2015. 5. 7		
서대문구			○	2015. 4.15		
마포구	○	2015. 7.23				
양천구			○	2015.10.30		
강서구			○	2015.12.30		
구로구			○	2015. 3.26		
금천구	○	2015.10.8				
영등포구			○	2015. 9.24		
동작구	○	2015. 2.26				
관악구			○	2015. 7.30		
서초구	미제정					
강남구	미제정					
송파구	○	2015.12.28				
강동구			○	2016. 6.17		

○ 이후 2013년 12월 부천시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어 2014년 8월 서울시 노원구, 2014년 9월 서울시 성북구에서 제정되었음. 2016년 9월 기준 전국적으로 244개 지자체 중 26.6%인 65곳에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었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2014년 7월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고, 이어 2014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2015년 1월 서울특별시, 2015년 5월 광주광역시 등 10곳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임. 그러나 생활임금제도 시행은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행을 했음.

○ 현재 생활임금은 적용 기준(원칙)과 대상(범위), 금액 등을 볼때 △부천시 모델, △서울시 모델(3인 가족 모델 등), △서울 성북·노원, 광주 광산 모델(총액, 제수당 포함 모델), △성남시 모델(최저임금 차액 지역상품권 지급) 등이 있음. 주로 생활임금 적용 금액(기본시급, 통상시급, 평균시급 등)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며, 적용 범위는 거의 대부분 직접고용 기간제에 한정된 상태이나, 서울시 및 서울 노원, 성북, 광주 광산 등은 간접고용까지 확대된 상태임.

〈표 2-3〉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기준액 및 적용방식 비교

구분	서울시	서울시 성북구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임금액	'17년 8,197원 '16년 7,145원 '15년 6,687원	'17년 8,048원 '16년 7,370원 '15년 7,150원	'17년 7,250원 '16년 6,600원 7,030원 '15년 6,050원	'17년 8,000원 '16년 7,000원
포함 수당	〔'17〕 통상임금 기준 〔'15~16〕 기본급+교통비+식대	월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총 수당 모두 포함	최저임금 산입수당 준용	기본급 교통비 교육비 복리후생비
적용 방식	절대적 + 상대적 방식 * 서울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서울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3% 반영, 최저임금액 반영	상대적 방식	상대적 방식	상대적 방식

주 : 성남 모델은 자체 결정 생활임금액(상대적 : 도시근로자평균임금 50%, 경기도 소비자물가지수 7.1%, 최저임금과의 차액 반영)과 최저임금 차액을 지역 시장 쿠폰(화폐: 상품권)로 제공하는 방식

Ⅲ. 국내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과 실태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1. 지자체 노동정책으로서 생활임금

○ 그간 노동정책은 국가 사무(고용노동부)의 역할이었음. 때문에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고용이나 일자리 정책 정도였음. 그나마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이라는 유노조 대상 노동정책이 전부였음. 그러나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이라는 임금정책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4분의 1정도에서 도입되었다는 것은 지방정부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노동정책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임.

○ 국내 생활임금 연구들과 논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문제의식들이 제기되고 있음. 첫째, 과연 국내 지자체 생활임금은 '적절한 수준의 생활임금(decent living wage)'으로서 가능한가? 둘째, 지자체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누구이며, 결정 방식과 산입 기준 그리고 결정 과정 등은 어떤 상황인가? 셋째, 생활임금은 저임금 해소에 기여했는가? 넷째,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직접고용 종사자만이 아니라, 간접고용 및 민간위탁과 민간부문까지 포괄하고 있는가?

2.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과 평가

가. 지자체 생활임금 적용 인원과 직무

○ **첫째**, 국내 지자체 생활임금을 논의 할 때 가장 핵심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과연 몇 명인가하는 질문임. 2016년 현재 서울지역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4,908명(서울시 1,480명, 20개 자치구 3,428명)으로, 2015년 1,836명(자치구 797명)에 비해 약 2.7배(3,072명)나 증가했고 2014년(211명)에 비하면 2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생활임금 적용대상 성별 현황을 보면 11개 자치구만 보면 남성(1,047명)이 여성(565명)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상황임(〈표3-11〉).

○ 생활임금의 취지가 낮은 최저임금을 견인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적용대상 중 여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남성이 더 많았음. 만약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 성별 구분이 포함되거나, 자치구 간접고용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포함될 경우 이 비중은 변

화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2017년부터 지자체 생활임금은 적용대상 공시 때 성별 인원이 구분(성인지적 노동행정)된 현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표 3-1〉 각 지역별 생활임금 적용 인원(2014~2016)

구분	2014년 12월 기준			2015년 12월 기준			2016년 12월 적용 기준			비고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서울시				1,039			1,480			
종로구				101	33	68	83	26	57	
중구										미시행
용산구							245			예정
성동구							298	152	146	
광진구							105			
동대문구				124						
중랑구										미제정
성북구	110			183			302			
강북구							33			
도봉구				47			241			
노원구	101			221			211			
은평구							115	40	75	
서대문구							79	23	56	
마포구							292			
양천구							230	24	206	
강서구							69	37	32	
구로구				121	50	71	108	48	60	
금천구							50	28	22	
영등포구							387			
동작구							181	62	119	
관악구							194	78	116	
서초구										미제정
강남구										미제정
송파구										미시행
강동구							205	47	158	
서울 전지역	211			1,836			4,908			
성별구분					83	139	1,612	565	1,047	

주 : 1)서울시 중구는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미시행 중이고, 송파구는 조례 제정 이후 '17년 시행(2016년 8월 30일 생활임금위원회 출범), 서초구는 구의회에 현재 조례 계류 중
2) 2017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가 포함되어 약 4,482명(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219명, 투출기관 4,263명) 정도 되고, 뉴딜일자리(前 공공근로 성격 일자리)가 포함되어 그 숫자는 5천 5백명 남짓이 될 것으로 추정

자료 :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제출자료 필자 분석(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실 제공)

○ **둘째**, 서울지역 지자체 생활임금 적용대상 중 어떤 직무(job)들이 적용 대상인지, 또한 주요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직종과 일치 되는가의 질문임. 2016년 현재 서울지역 생활임금 적용대상 직무는 크게 11개 직무로 구분 가능함. 서울시 및 20개 자치구 생활임금 적용대상 직무 중 시설관리(17곳), 사무행정(17곳), 공원녹지(17곳) 3개 직무가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기타 단순노무(16곳), 청소(14곳), 주차안내(13곳), 환경미화(10곳), 경비(9곳), 도로보수(6개), 기타 전문직(6곳), 콜센

터(4곳)이었음(〈표3-2〉).

○ 서울지역 지자체 생활임금 대상은 '남성 저임금 직종'(시설, 공원녹지, 환경미화, 경비, 도로보수)과 '여성 저임금 직종'(사무행정, 청소, 콜센터)으로 구분되며, '혼재 저임금 직종'(기타 단순노무, 전문직, 주차안내)의 경우 다수의 많은 소수 직무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 이렇게 지자체 생활임금에 다수의 남성 중심 직종들이 적용 받는 이유는 상시지속 업무에 남성 중심 저임금 직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일시간헐이나 국시비 일자리 보조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등에 여성 다수 저임금 직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현재 지자체 거의 대부분 '매칭사업'이나 '일시간헐' 사업에 여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해당 생활임금 적용대상 예외 규정으로 되어 있음.

〈표 3-2〉 각 지역별 생활임금 적용 직무와 인원(2016)

	시설	사무 행정	공원 녹지	기타 단순 노무	청소	주차 안내	환경 미화	경비	도로 보수	기타 전문직	콜센터 상담
전지역	17개	17개	17개	16개	14개	13개	10개	9개	6개	6개	4개
서울시	○	○	○	○	○	○	○	○	○	○	○
종로구	O	O	O	O	O	O			O		
용산구	○	○		○	○		○				
성동구	○	○		○	○	○	○			○	○
광진구		○	○		○		○				
동대문구	○			○	○		○	○			
성북구	○	○	○		○	○		○	○		
강북구		○	○	○							
도봉구	○	○	○	○	○	○	○	○	○	○	○
노원구	○	○	○	○	○	○		○			
은평구	○	○	○	○		○					
서대문구	○	○	○	○	○					○	
마포구	○		○		○			○			
양천구	○	○	○	○	○		○			○	
강서구	○	○	○		○	○					
구로구	○	○	○	○	○	○		○	○		
금천구			○	○	○		○				
영등포구	○		○	○	○	○		○	○		
동작구	○	○		○	○	○	○	○			○
관악구	○	○	○		○	○	○				
강동구	○	○	○	○		○				○	
중구	미시행										
중량구	미시행										
서초구	미시행										
강남구	미시행										
송파구	미시행										

주 : ○ 표기된 곳은 해당 직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곳을 의미함.

나. 지자체 생활임금 금액과 예산

○ **첫째**, 서울지역 지자체 생활임금은 광역과 자치구별 금액 차이가 존재하며, 금액 차이는 절대 금액의 차이와 산입기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임. 2016년 기준 서울시 및 20개 자치구 생활임금은 최대 7,600원(성동구)에서 최소 6,934원(강서구)으로 666원 차이가 있음. 서울시 생활임금(7,145원)과 같은 자치구는 6곳 정도이며 그 외 지역은 자체 생활임금 결정액에 따라 편차가 존재함. 문제는 서울지역 21곳(광역, 자치구)의 생활임금액의 결정 기준 즉, 산입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임(〈표3-3〉).

○ 현재 서울지역 생활임금 산입 기준 항목은 A유형(기본급+교통비+식대), B유형(통상임금기준 : 기본급+통상수당), C유형(평균임금 기준 : 기본급+제수당)으로 구분됨. 현재 거의 대부분 A유형이나 B유형과 C유형도 각각 3~5곳 내외 정도 됨. 생활임금의 산입 기준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초기 생활임금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향후 보편적 기준으로 조율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법률로 통용되는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수준으로 생활임금 산입 기준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4)]

○ **둘째**, 서울지역 지자체 생활임금 시행을 소요되는 예산은 노동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임. 2016년 기준 서울지역 생활임금 시행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91억4천만원(서울시 15억5천만원, 20개 자치구 1곳당 평균 2억9천7백만원) 정도였음. 지난 3년간 서울지역 생활임금 시행으로 총 소요된 예산은 101억5천만원(서울시 30억, 20개 자치구 1곳당 평균 3억5천만원) 정도였음(〈표3-4〉).

○ 물론 서울지역 각 지역별 생활임금 산입 기준과 적용대상 인원에 따라 생활임금 소요 예산은 차이가 있음. 예를 들면 2016년 기준 서울시 20개 자치구 중 최대 소요 예산 지역은 성동구(7억6천만원)와 성북구(7억1천만원)였고, 최소 소요 예산 지역은 강북구(4천3백만원)와 금천구(4천5백만원)였음. 결국 각 자치구별 생활임금의 편차도 최대 7억6천만원에서 최소 4천3백만원으로 그 격차는 7억2천만원이나 됨.

---

4) 일부 지자체처럼 기본급과 제수당 모두를 포함하는 것은 평균임금 산입 기준인데, 이것은 퇴직금 등의 적용하기 위한 방식의 임금산정 기준으로 생활임금이 낮은 최저임금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에는 다소 부적합함. 그 이유는 기본급에 제수당을 모두 산입한 경우 생활임금(시급)이 절대 금액보다 과대 추계되는 우려가 있음.

〈표 3-3〉 각 지역별 생활임금 금액(2014~2016)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시급	월 환산액	시급	월 환산액	시급	월 환산액
서울지역 평균	6,850		6,968	1,450,915	7,201	1,505,121
서울시			6,687	1,397,583	7,145	1,493,305
종로구			6,737	1,408,000	7,145	1,493,305
중구	미시행					
용산구					7,020	1,467,180
성동구					7,600	1,588,400
광진구					7,200	1,504,800
동대문구			7,236	1,512,324		
중랑구	미시행					
성북구	6,850	1,432,000	7,150	1,495,000	7,585	1,585,000
강북구					7,130	1,490,170
도봉구			6,850		7,130	1,490,170
노원구	6,850	1,432,000	7,150	1,495,000	7,370	1,542,000
은평구					7,180	1,500,620
서대문구					7,200	1,504,800
마포구					7,145	1,493,305
양천구					7,145	1,493,305
강서구					6,934	1,449,200
구로구			6,687	1,397,583	7,368	1,539,912
금천구					7,239	1,512,950
영등포구					7,145	1,493,305
동작구					7,185	1,501,665
관악구					7,145	1,493,305
서초구	미시행					
강남구	미시행					
송파구	미시행					
강동구					7,013	1,465,717
경기지역 평균	5,874	1,227,567	6,455	1,349,329	6,947	13,056,950
경기도			6,810	1,424,224	7,030	1,498,250
수원시	6,167	1,288,903	6,600	1,379,400	7,140	1,492,260
성남시						
부천시	5,580	1,166,230	6,050	1,264,450	6,600	1,379,400
안산시					7,040	1,471,110
화성시					7,260	1,517,340
시흥시			6,800/8,150	1,500,000 /1,800,000	6,800 /8,150	1,500,000 /1,800,00
김포시					6,940	
광명시					6,600/6,800	1,421,000
이천시			6,360	1,329,240	6,870	1,435,830
의왕시					6,500/6,870	1,358,500 /1,394,030
여주시					6,570	1,373,130
고양시					7,070	1,477,630

자료 : 서울시 및 자치구 제출자료 필자 분석(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실), 경기도는 정형옥(2016) 재인용

〈표 3-4〉 각 지역별 생활임금 산입 기준

	기본급 (19곳)	교통비 (19곳)	식대 (19곳)	정기 상여금 (6곳)	가족 수당 (7곳)	자격 수당 (6곳)	복지 포인트 (5곳)	기타 고정수당 (9곳)	기타 변동수당 (3곳)
서울시	○	○	○						
종로구	○	○	○						
중구	심의회결정								
용산구	○	○	○						
성동구	○	○	○		○	○		○	
광진구	○	○	○	○	○	○	○	○	
동대문구	○	○	○	○	○	○	○	○	○
중랑구	미제정								
성북구	○	○	○		○		○	○	
강북구	○	○	○	○	○	○	○	○	○
도봉구	○	○	○	○	○	○	○	○	○
노원구	○	○	○	○	○	○	○	○	○
은평구	○	○	○					○	
서대문구	○	○	○						
마포구	○	○	○						
양천구	○	○	○						
강서구	○	○	○	○					
구로구	○	○	○						
금천구	○	○	○	○	○	○		○	
영등포구	○	○	○					○	
동작구	○	○	○						
관악구	○	○	○						
서초구	미제정								
강남구	미제정								
송파구	미시행								
강동구	○	○	○						
경기도	○	○	○	○		○		○	
수원시	○	○	○	○	○	○		○	
성남시	○	○					○		
부천시	○	○	○					○	
안산시	○		○						
화성시	○			○	○	○		○	
시흥시	○								
김포시	○	○	○						
광명시	○	○							
이천시	○		○						
안성시	○								
구리시	○								
의왕시	○	○	○	○	○	○	○	○	
여주시	○								
고양시	○	○	○						

〈참조〉 각 지역별 생활임금 측정 지표

구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 수준(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공공, 전문 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기타
서울시	○	○	○			주거비
종로구	O	O	O			
중구	○	○	○	○		시 재정 상황
용산구	○	○	○			
성동구	○		○			
광진구	○	○	○	○		
동대문구	○	○	○			
중랑구	미시행					
성북구		○		○		
강북구	○	○	○			
도봉구	○	○	○	○		
노원구	○	○		○		
은평구	○	○	○	○		
서대문구	○	○	○			
마포구	○	○	○			
양천구	○	○	○			
강서구	○	○	○			
구로구	○	○	○			
금천구	○	○	○			
영등포구	○	○	○			
동작구	○	○	○			
관악구	○	○	○			
서초구	미시행					
강남구	미시행					
송파구	○	○	○			
강동구	○	○	○			
경기도	○	○	○	○	○	
수원시	○	○	○	○		
성남시	○	○	○	○		
부천시	○			○		
안산시	○	○	○	○		시 재정 상황
화성시	○			○		
시흥시	○			○		시 재정 상황
김포시	○			○	○	
광명시	○	○	○	○		
이천시	○			○		시 재정 상황
안성시	○	○	○	○		
구리시	○			○		
의왕시	○	○	○	○		
여주시	○	○	○	○		

〈표 3-5〉 각 지역별 생활임금 소요 예산액(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누계
서울지역 총액 (자치구 평균)	276 (138)	2,678 (205)	9,141 (297)	10,156 (357.6)
서울시		1,447	1,556	3,003
종로구		153	198	351
중구	미시행			
용산구			212	212
성동구			765	765
광진구			233	233
동대문구		200		200
중랑구	미시행			
성북구	125	270	710	1,105
강북구			43	43
도봉구		109	215	324
노원구	151	369	381	901
은평구			146	146
서대문구			151	151
마포구			401	401
양천구			323	323
강서구			307	307
구로구		130	300	430
금천구			45	45
영등포구			629	629
동작구			96	96
관악구			279	279
서초구	미시행			
강남구	미시행			
송파구	미시행			
강동구			212	212
경기지역 총액 (자치시 평균)	373 (186)	1,588 (368)	2,141 (182)	4,102 (350)
경기도		113		113
수원시	200	400	600	1,200
성남시			129	129
부천시	173	402	48	623
안산시			309	309
화성시			77	77
시흥시		479	81	560
김포시			300	300
광명시			44	44
이천시		194	311	505
의왕시			77	77
고양시			33	33

다. 지자체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범위

○ **첫째**, 서울지역 지자체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범위는 거의 대부분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 모두 직접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대상으로 우선하고 있음. 다만 각 지자체 행정조직 내 재배구조에서 벗어날수록 그 적용대상은 숙소되고 있음. 예를 들면 지자체 산하 투출기관 적용은 20곳, 위탁업체 소속 적용은 14곳, 위탁업체 하수급인 적용은 13곳으로 축소됨.

○ 문제는 조례 상 각 지자체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 소속 근로자나 산하기관과 위탁기관까지 명시적으로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 적용은 서울시를 제외하면 민간위탁까지 적용하고 있는 곳은 아직 없음. 또한 다수의 지자체에서 국시비 매칭 일자리 사업이나 외주 및 임대업체, 협력업체(third party suppliers) 그리고 지자체 보조 기업이나 단체까지는 확대 여부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표 3-7〉).

라. 지자체 생활임금 구성 및 운영

○ **첫째**, 서울지역 지자체 생활임금 결정의 거의 대부문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됨. 2016년 6월 기준 서울시와 자치구(18곳)의 생활임금 위원은 총 152명(평균 7.5명)이었음. 서울지역 지자체 생활임금위원회 성별 구성은 남성(총 103명, 평균 5.1명)이 여성(총 47명, 2.3명)보다 두 배 정도 많았음. 서울지역 생활임금위원회 성별분포에서 남성이 많은 이유는 내부 당연직(공무원, 시의원)과 외부 전문위원(전문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 단체) 모두 남성이 많기 때문임. 특히 동대문구와 마포구는 생활임금위원회에 여성이 0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여성위원 추가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문제는 서울지역 지자체 생활임금위원회 구성분포 중 각 주체 및 이해당사자 구성의 참여나 편차가 크다는 것임. 무엇보다 서울지역 전체 위원 중 공무원 및 시의회 등 정부위원(총 64명, 평균 3.2명)이 전체 42.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임. 그 다음으로 공익위원 및 전문가 31.5%(총 48명, 평균 2.4명), 시민단체 및 노사관계자 25.6%(총원 39명, 평균 2.1명) 순이었음. 그런데 전문가 및 노사관계자 내부에서도 다소 위원 구성에 편차가 존재함.

○ 조례상 위원회 구성(제5조)에는 임금 및 관련 전문성을 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자체

전문가 중 노동, 임금 등 생활임금 관련 전문가보다 타 전공 전문가(교수, 학계, 연구자)들이 포함된 곳들이 일부 있고, 변호사나 노무사 이외의 다소 노동법률과 무관한 전문위원이 포함된 곳도 있음. 특히 노사 양 당사자 중 사용자단체 위원은 18명이나 노동단체 위원(추천 1인 제외)은 4명에 불과하여, 노사 비례 원칙에도 다소 맞지 않는 상황임.

○ **둘째**, 서울지역 지자체 생활임금 결정 관련 위원회 개최 및 운영 또한 다소 해결해야할 과제를 갖고 있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회수는 평균 1.5회에 불과한 실정임. 그나마 2015년 서울시가 상·하반기 각 2차례씩 진행되었을 뿐 자치구 생활임금위원회는 1회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논의가 기초 자료와 논의 등을 통한 방식보다는 지자체 안을 수렴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일부 지적을 방증하는 것임.

○ 특히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생활임금 단계별 적용이나 연구조사 등을 논의 할 수 있는 조항(제4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이 대부분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도 깊은 논의보다는 집행부의 논의 안을 승인하는 정도 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게다가 서울시(평균 2시간)를 제외한 자치구 생활임금위원회 논의는 1시간 내외에 불과하여 생활임금 심의나 확산 등의 발전적 논의가 풍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임.

〔그림 3-1〕 서울지역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구성 분포(2016.6,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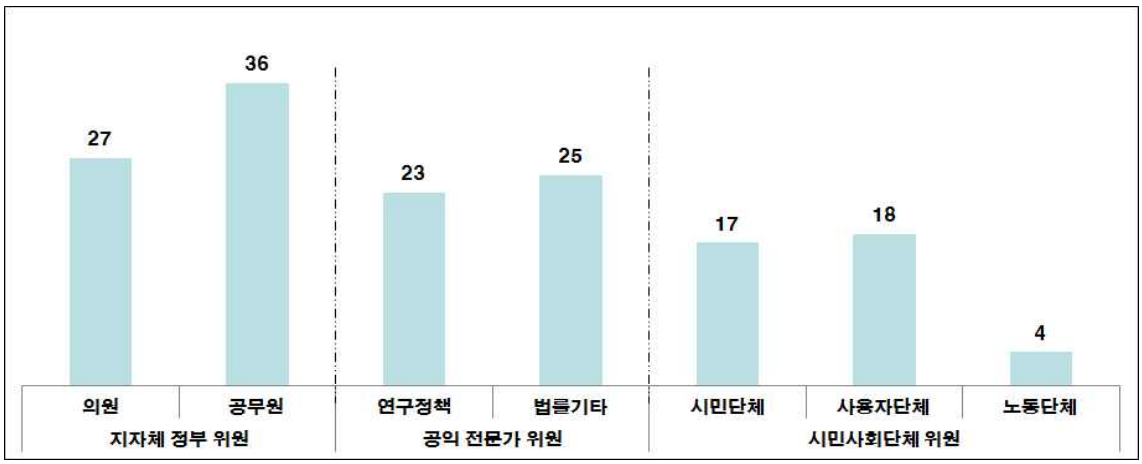

〈표 3-6〉 각 지역별 조례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지역	1)시/자치구 소속근로자	2)시/자치구 산하투자출연기관근로자	3)시/자치구로부터그사무를위탁받거나시에공사,용역등을제공하는기관및업체소속근로자	4) 3)의기관및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5) 외주화된 계약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	비고
서울시	○	○	○	○			
종로구	○						
중구	○	○	○	○			
용산구	○	○					
성동구	○	○	○	○			
광진구	○	○					
동대문구	○						
중랑구							미 제정
성북구	○	○	○	○			
강북구	○	○	○	○			
도봉구	○	○	○	○			
노원구	○	○	○	○			
은평구	○	○	○	○			
서대문구	○	○					
마포구	○	○	○	○			
양천구	○	○					
강서구	○	○	○	○			
구로구	○	○	○	○			
금천구	○	○	재량 규정	재량 규정			
영등포구	○	○	○				
동작구	○	○	○	○			
관악구	○						
서초구							미 제정
강남구							미 제정
송파구	○	○					
강동구	○	○	○	○			
경기도	○	○	○				
수원시	○		○	○			
성남시	○	○	○	○			
부천시	○	○					
안산시	○	○	○	○	○		
화성시	○	○	○				
시흥시	○	○					
김포시	○	○					
광명시	○	○	△	○			
이천시	○						
안성시	○	○					
구리시	○	○					
의왕시	○	○					
여주시	○	○					

〈표 3-7〉 각 지역별 조례 생활임금 적용 장려 및 제외 대상

구분	적용 장려	적용 노력	적용 제외	비고
	시와 위탁, 용역, 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	단체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서울시	○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미제정
성북구	○	○	○	
강북구	○		○	
도봉구	○	○	○	
노원구		○	○	
은평구		○	○	
서대문구	○		○	
마포구	○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미제정
강남구				미제정
송파구			○	
강동구	○			
경기도	○	○	○	
수원시	○		○	
성남시	○	○	○	
부천시		○	○	
안산시	○		○	
화성시			○	
시흥시			○	
김포시	○	○	○	
광명시			○	
이천시			○	
안성시			○	
구리시	○	○	○	
의왕시	○		○	
여주시			○	

*주 : 서울시는 2017년부터 과거 공공근로의 한 형태였던 뉴딜일자리까지 생활임금을 확대적용하기로 했음.

〈표 3-8〉 각 지역별 조례 생활임금위원 성별 구성 분포(2016)

서울	생활임금 위원 및 구성			경기	생활임금 위원 및 구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지역 평균	7.5	2.3	5.1	**지역 평균**	9.1	2.5	6.6
서울시	11	4	7	**경기도**	7	3	4
용산구	5	2	3	수원시	14	3	11
성동구	7	2	5	성남시			
광진구	8	2	6	부천시	6	1	5
동대문구	5	0	5	안산시	9	3	6
성북구	7	2	5	화성시	7	1	6
강북구	9	5	4	시흥시	7	2	5
도봉구	8	1	7	김포시	11	2	9
노원구	9	1	8	광명시	10	4	6
은평구	6	2	4	이천시	7	1	6
서대문구	9	4	5	의왕시	9	3	6
마포구	7	0	7	여주시	8	3	5
양천구	9	3	6	고양시	15	4	11
강서구	5	1	4				
구로구	7	4	3				
금천구	7	2	5				
영등포구	9	4	5				
동작구	7	1	6				
관악구	7	3	4				
강동구	8	4	4				

〈표 3-9〉 각 지역별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구성 분포

	서울지역 생활임금 위원회 위원 구성															
	합계	정부 위원						공익 위원			시민사회 및 노사 관계자					
		계	시구의원	해당 공무원			정부공공기관	전문가			계	시민사회단체	노사 단체			
				소계	노동일자리	예산총무인사부서		소계	연구정책	법률기타			사용자	노동단체		
														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서울지역 평균	7.6	3.2	1.4	1.6	1.7	1.1	1.3	2.4	1.6	1.5	2.1	1.5	1.2	1	1	1
총원	152	64	27	32	21	11	4	48	23	25	39	17	18	4	2	2
서울시	12	4	2	2	1	1		5	4	1	2	1	1			
용산구	5	3	1	2	1	1		1	1		1			1		1
성동구	7	3	1	1	1			3	2	1	2	1	1			
광진구	8	5	1	3	1	2	1	2	1	1	1		1			
동대문구	5	3	1	1		1	1	2		2						
성북구	7	2	1	1	1			3	2	1	2		1	1	1	
강북구	9	4	1	3	2	1		5	2	3						
도봉구	9	4	1	3	2	1		2	1	1	2		1	1	1	
노원구	9	3	2	1		1		2	2		4	1	2	1		1
은평구	6	2	1	1	1			1	1		3	2	1			
서대문구	9	3	2	1	1			4	2	2	2	1	1			
마포구	7	3	2	1	1			3	1	2	1		1			
양천구	9	3	2	1	1			2		2	4	4				
강서구	5	2	1	1	1			1		1	2		2			
구로구	7	2	1	1	1			3	2	1	2		2			
금천구	7	3	1	2	1	1		3	1	2	1	1				
영등포구	9	5	1	2	1	1	2	1		1	3	2	1			
동작구	7	4	2	2	1	1		1		1	2	1	1			
관악구	8	4	2	2	2			2	1	1	2	1	1			
강동구	7	2	1	1	1			2		2	3	2	1			

주 : 1)서울시 및 자치구(20개) 생활임금 위원 152명 중 최 봉(서울연구원 : 9곳, 서울시,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2곳, 서울시, 노원구), 황선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곳, 서울시, 강북구)의 중복 위원을 제외하면 실제 생활임금위원 인원은 139명으로 볼 수 있음.

2)자치구 2곳 생활임금 위원 중 서울시 명예옴브즈만(노동조합 간부 겸 노무사)은 전문가(노무사)로 구분. 한국노총 산하 연구원 소속 위원(2곳)은 '전문 연구자'로 구분하여 분리

3)일부 전문가 및 법률(변호사, 세무사) 중에서도 생활임금 무관한 위원도 있으나 위원 명단 그대로 포함

〈표 3-10〉 각 지역별 조례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개최(2016)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비고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예정)	
서울지역 평균	1		1	1.1	1	1		1.5		
서울시				2	1	1	4	2	2	
종로구										9월 구성 개최예정
중구										미구성
용산구				1		1				
성동구				1		1				
광진구				1		1				
동대문구				1		1				
성북구	1		1	1		1				
강북구				1		1				
도봉구				1		1				
노원구	1		1	1			1		1	
은평구						1				
서대문구				1		1	1		1	
마포구				1		1	1		1	
양천구				1		1				
강서구							1	1		
구로구				2	1	1				
금천구				1		1	1		1	
영등포구				1		1				
동작구				1		1	1		1	
관악구				1		1				
강동구				1		1	1		1	
경기지역 평균	2			1.6			1.3			
경기도				2						
수원시	2			2				2		
성남시										
부천시	2			5			1			
안산시										
화성시				1						
시흥시				1						
김포시				1						
광명시				1						
이천시				1			1			
안성시				1						
의왕시				1						
여주시							2			
고양시										

Ⅳ. 지자체 생활임금 의의와 개선 과제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1. 서울시 생활임금 추진 현황과 실태, 의의

○ **첫째**, 서울지역 생활임금은 지난 2014년 성북, 노원을 시작으로 2015년 1월 서울시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후 서울지역 다수 자치구에서 생활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생활임금은 서울연구원(절대적 방식 → 서울형 생활임금 모델)의 연구용역을 통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 결정되고 있음. 또한 서울시 자체적으로 생활임금 대상 및 조사 등을 자체(노동정책과 및 유관부서)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공포('15.1.2)
※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발의(76명 공동발의)
□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개최('15.2.13)
□ '15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15.2.26)
□ 市, 투자·출연기관 '15년 생활임금 적용대상 전수조사(1차, 제2차)('15.5.7~8.7)
□ '15년 생활임금 적용대상 임금 지급('15.8.21)
- 적용대상 : 1,039명(시 137, 투자·출연기관 902), 보전금액 1,446백만원
□ '16년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전수조사('16.3.)
□ '16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표준계약서 개정 통해 생활임금 적용 규정
□ '16년 민간위탁 생활임금 적용 확대 1,480명 지급 고시('16.6.), 보전금액 1,000백만원

〈표 4-1〉 생활임금 산정 방식 - 상대적 방식과 절대적 방식[5)]

구분	상대적 방식	절대적 방식
기준	임금 또는 소득수준의 중위(median), 평균(mean)의 일정비율이나 빈곤선	생활에 필요한 품목 선정 후 비용 산출(이론) 또는 실제 생활비 자료 활용(실태)
목표	분배 개선, 불평등 완화	임금의 사회적 요구 수준 도출
단점	자의성	자의성(이론) 과소추정 가능성(실태)
예시	중위소득수준 또는 최저생계수준의 150%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최저생계비(이론) 최저임금위원회의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실태)

자료 : 김종진·박용철·이정아·송민정(2016)

5) 생활임금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이론방식'과 '실태방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적 방식은 모두 실태 방식에 포함됨. 미국 MIT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발한 생활임금 계산기(living wage calculator)가 제시하는 앨라배마 주의 사례로, 절대방식(실태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이론방식의 요소를 혼합함. 이론 방식에 의한 기본 생활비 항목과 범주를 결정하고 실태조사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총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런던시 생활임금 결정에서도 채택하고 있음.

〈표 4-2〉 생활임금 산정 방식과 추정방식 및 자료 구성

구분	추정 방식	자료
절대적 방식	기본생활비용추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5년
	표준 생계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5년
상대적 방식	시간당 정액급여(고용노동부 방식) 50%, 60%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 2015년
	시간당 정액급여(고용노동부 방식) 중위 60%, 2/3	
	월급여 평균 50%, 60%	
	시간당 정액급여(고용노동부 방식) 평균 50%, 60%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5년
	시간당 정액급여(고용노동부 방식) 중위 60%, 2/3	
	월급여 평균 50%, 60%	
	시간당 임금 평균 50%, 6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5년 8월
	시간당 임금 중위 60%, 2/3	
	월급여 평균 50%, 60%	
	월급여 평균 50%, 60%, 중위 2/3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2015년 하반기
	시간당 임금 평균 50%, 60%	
	시간당 임금 중위 50%, 60%, 2/3	

○ **둘째**, 서울지역 생활임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적용대상은 1차(직접고용), 2차(간접고용 및 민간위탁), 3차(민간확산)로 진행되고 있음. 2015년 서울시 생활임금(6,687원) 1차 적용대상은 1,039명(소요예산: 14억9천만원) 정도이며, 2016년 2차 적용 대상은 1,480명(소요 예산: 10억원) 정도로 추산됨.〔*1차, 2차 단순 합계 2,519명 적용 → 전국 최초 민간위탁 적용 〕

〈표 4-3〉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2015, 단위: 명, 천원)

구 분	적 용 인 원	생활임금 보전수당	예산 부족액	채 용 형 태	비 고
계	**1,039**	**1,446,816**	**45,326**		
시본청	5	3,631	-	기간제근로	
사 업 소	132	95,615	45,326	기간제, 준공무직	자체예산 부족 4개 기관
투자,출연기관	902	1,347,569	-	기간제, 준공무직	기관 자체예산활용 8개 기관

주 : 1)사업소 지원 대상은 생활임금 보전액 자체 예산부족 기관(4개 기관 5개 사업, 49명, '15.1-12)
2) 재배정 예산액 : **45,326천원**(예산과목 : 근로자복지증진, 생활임금지원(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표 4-4〉 서울시 민간위탁 생활임금 확대적용 실태(2016년 하반기, 단위: 명, 백원)

민간위탁	민간위탁 사업소	민간위탁 종사자	생활임금 적용대상	생활임금 실제 적용 종사자	생활임금 적용 소요금액
전체 규모	347개	15,587			
'16년 적용	36개		3,287	1,480	1,556
'16년 미적용	36개		1,480		1,556

주 : 2016년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은 347건(1조255억원)이며, 15,587명(정규직 12,442명/79.8%, 비정규직 3,145명/20.2%)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시행 2015.1.2. 조례 제5813호〕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 **셋째**, 서울시 생활임금은 2015년 10월 민간확산을 위한 서울지역 4개 기관(시, 시의회, 교육청, 자치구) 생활임금 MOU 체결로 서울지역 기준(model of living wages)이 되고 있음. 2016년 서울지역 자치구 중 현재 5개의 자치구가 서울시 기본 적용 모델(절대적 방식, 7,145원)을 선택 및 금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다만, 2015년 서울시와 협약한 자치구 중에서도 서울시 생활임금액보다 적은 곳들이 다수 있음.

「생활임금 민간확산을 위한」 4개 기관(시,시의회,교육청,자치구)
생 활 임 금 M O U 체 결 (2 0 1 5 . 1 0 . 8 .)

적정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업무 협약서(안)**
서울특별시,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 해당자치구는 서울시 주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도의 확산과 정착 및 일관된 제도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공통사항-
① 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임금 지급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환경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

-공공부문 협력사항-
① 생활임금의 수준, 산정근거, 적용범위의 일관성 유지
②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상호협력 및 적정모델개발 등

-민간확산을 위한 협력사항-
① 우대정책, 가점평가 등을 통한 민간업체 생활임금 수용 유도
② 공공서비스 민간기관(대학,병원) 등으로 생활임금 확산 캠페인 공동추진

제4조(서울시 생활임금 네트워크 구성·운영) 협약 기관은 협약 내용의 체계적 추진 및 생활임금 제도의 일관된 실현을 위해 (가칭) 서울시 생활임금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한다.

〔참조〕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 및 분포(1/4분기, 단위: 원)

순위	자치구	지역 시급	자치구 생활임금	순위	자치구	지역 시급	자치구 생활임금
1	강서구	6,882	6,934	14	서대문구	6,610	7,200
2	강남구	6,848	미제정	15	광진구	6,604	7,200
3	동대문구	6,733	7,236	16	구로구	6,570	7,368
4	영등포구	6,720	7,145	17	동작구	6,564	7,185
5	강북구	6,714	7,130	18	은평구	6,558	7,180
6	마포구	6,711	7,145	19	강동구	6,556	7,013
7	서초구	6,701	미제정	20	성동구	6,546	7,600
8	중구	6,684	미제정	21	성북구	6,493	7,585
9	금천구	6,671	7,239	22	관악구	6,492	7,145
10	종로구	6,665	7,145	23	중랑구	6,450	미제정
11	송파구	6,649	미제정	24	노원구	6,448	7,370
12	용산구	6,635	7,020	25	도봉구	6,376	7,130
13	양천구	6,611	7,145	*** 서울시 전체 시급 6,687 (서울시 생활임금 7,145원)**			

주 : 1) 서울지역 시급은 (주)알바천국 2016년 1/4분기 구인광고 251,845건 시급 분석 현황(김종진)
2) 각 자치구 생활임금 적용 기준(기본급 + 식대 + 교통비 + 고정 수당 + 변동 수당)이, 각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 어려움(서울시 : 기본급 + 식대 + 교통비)

〔그림4-1〕 서울지역 2016년 생활임금 적용 현황(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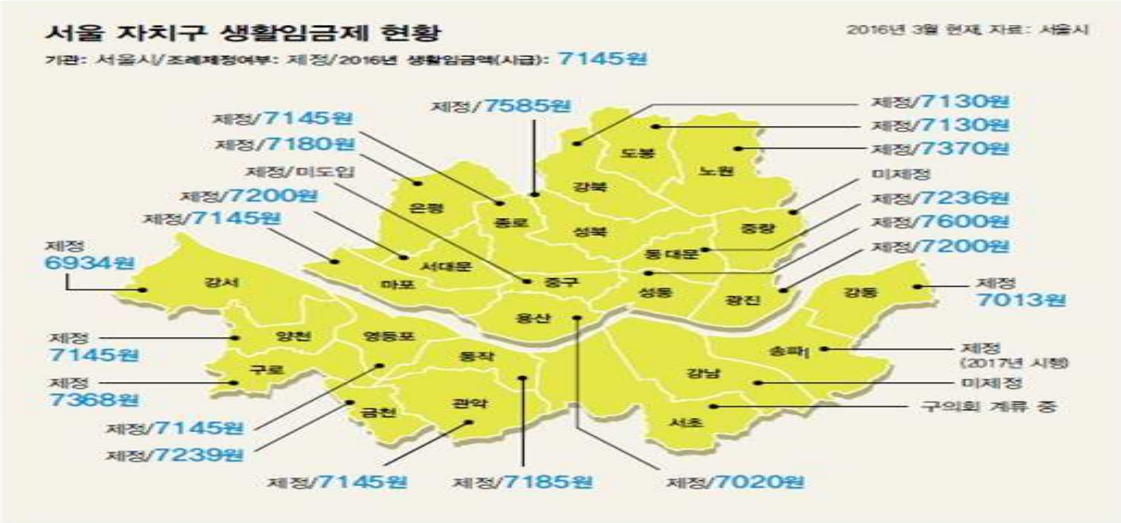

2. 서울시 생활임금 인식과 지향 - 서울시민 온라인 조사[6)]

○ **첫째**, 서울시민의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지도 간 격차 확인. 서울시민들은 최저임금제도 어느 정도 인식(99.1%)하고 있던 반면, 서울시 생활임금 인식은 절반 수준(49.9%)이었음. 특히 사회적 임금 성격(social wages)인 두 임금제도 중 '최저임금'의 적극적 인식(49.3%)에 비해 '서울시 생활임금의 적극적 인식'(8.3%)은 41.6%p 격차가 확인됨.

〔그림 4-2〕 서울시민의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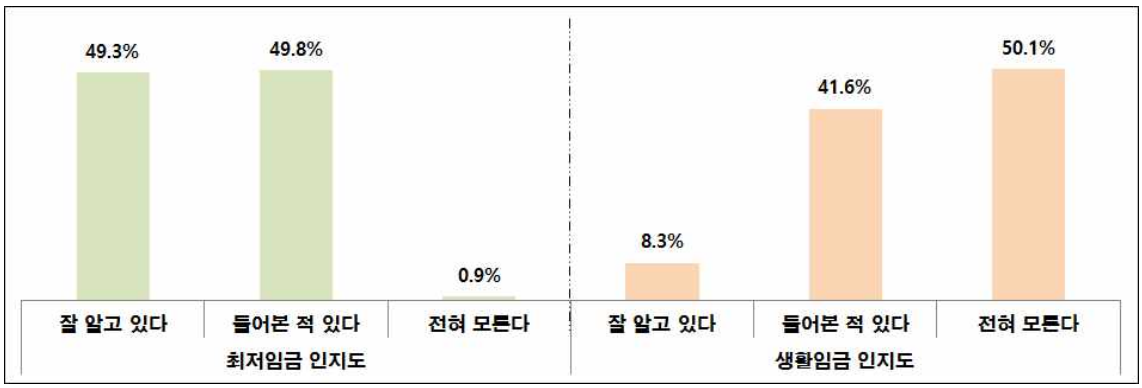

○ **둘째**, 서울시민의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인식. 서울시민

6) 이 조사는 서울연구원에서 민선 6기 서울시정 2주년인 2016년의 전반적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 평가 및 요구사항 등을 점검하여 향후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설문조사(Online Survey)를 실시(2016.5.10.~17, 총8일)한 원자료를 필자가 재분석한 것임. 조사대상은 서울거주 만 19세~만 60세의 시민 1,000명임(신뢰수준 및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P)

들은 최저임금 금액(2016년 시급 6,030원)이 낮다는 의견(76.2%)을 갖고 있었고, 서울시 생활임금 금액(2016년 7,145원)도 낮다는 의견(48%)을 갖고 있었음. 다만,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상대적 낮은 수준의 인식 격차가 28.2%p 격차로 확인됨.

〔그림 4-3〕 서울시민의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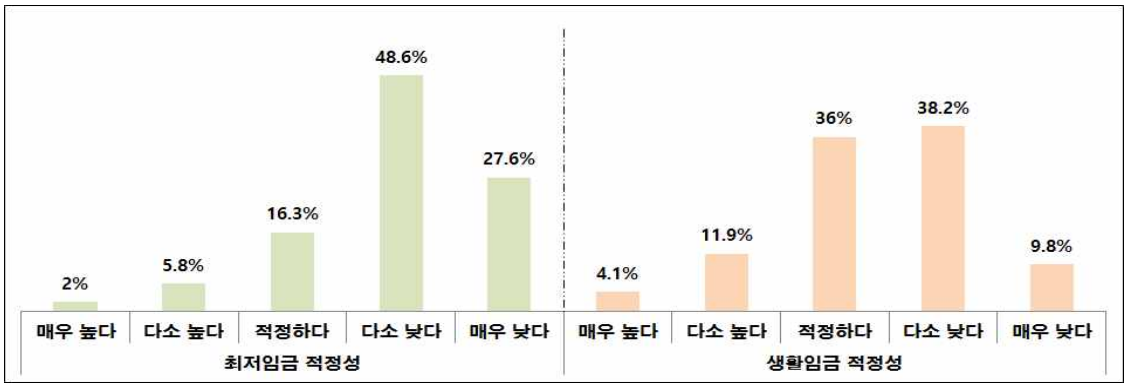

○ **셋째**, 서울시민의 생활임금 적정성과 향후 금액 지향의 차이 확인. 현재 서울시 생활임금(7,145원)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16%)는 2017년 생활임금 금액으로 약 6,500원(최소 3,000원 ↔ 최대 8,000원)으로 제시했음. 반면, 생활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48%)은 2017년 금액으로 약 9,500원(최소 8,000원 ↔ 최대 15,000원)을 제시했음. 생활임금 인식과 지향의 양극단 값을 종합하면, 2017년 생활임금 최소 금액으로 7,5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수렴되고 있음.

〔그림 4-4〕 서울시민의 2017년 생활임금 적정 금액 의견(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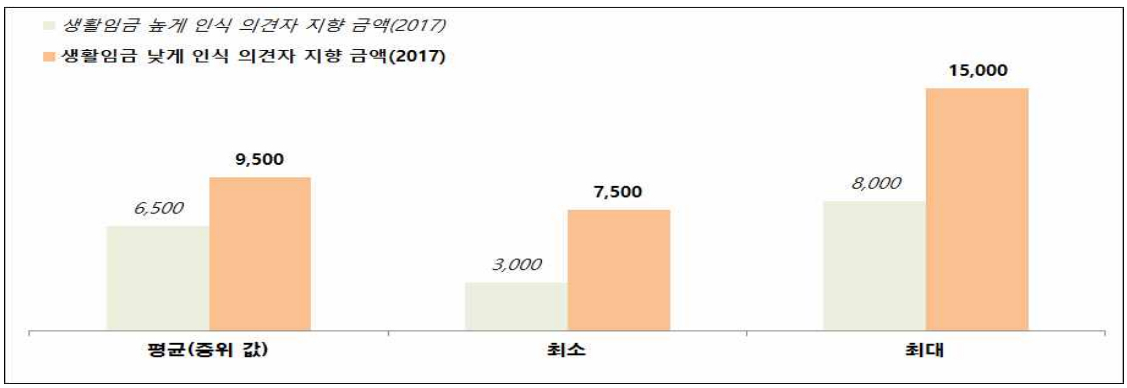

〈표 4-5〉 서울시 2017년 생활임금 적정 금액 의견

- 현재 생활임금 높다고 인식자 16% 의견(단위: 원, N=122)

계층	적정금액	최종 학력	적정금액	월 평균 소득	적정금액
사무관리전문직	6,500	초졸 이하	6,000	200만원 미만	6,300
판매서비스노무직	6,500	중졸 이하	6,030	200~300만원 미만	6,300
자영업자	6,400	고졸 이하	6,030	300~400만원 미만	6,500
주부/무직/기타	6,500	대졸 이하	6,500	400~500만원 미만	6,500
학생	6,500	대학원 졸 이하	6,500	500~600만원 미만	6,500
합계	6,500	합계	6,500	600만원 이상	6,500

주 : 사무관리전문직 640명, 판매서비스노무직 66명, 자영업자 48명, 주부/무직/기타 188, 학생 58명

〈표 4-6〉 서울시 2017년 생활임금 적정 금액 의견

- 현재 생활임금 낮다고 인식자 48%(단위: 원, N=464)

계층	적정금액	학력	적정금액	소득	적정금액
사무관리전문직	9,500	초졸 이하	8,000	200만원 미만	10,000
판매서비스노무직	9,000	중졸 이하	9,000	200~300만원 미만	9,000
자영업자	9,750	고졸 이하	9,000	300~400만원 미만	10,000
주부/무직/기타	10,000	대졸 이하	9,900	400~500만원 미만	9,000
학생	9,000	대학원 졸 이하	9,000	500~600만원 미만	10,000
합계	9,500	합계	9,500	600만원 이상	10,000

○ **넷째**, 서울시민의 생활임금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나, 민간으로의 확산 과제 필요성 인식.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생활임금 필요성'(63%, 보통 24%)의견이 '불필요성'(13%)보다 50%p 격차가 있었음. 다만, 현재 서울시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 효과(15%)보다는 시와 산하기관 취업자 일부(38%)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거나, 임금 노동자들에게 별다른 혜택이 없다(33.8%)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

〔그림 4-5〕 서울시민의 '생활임금 필요성'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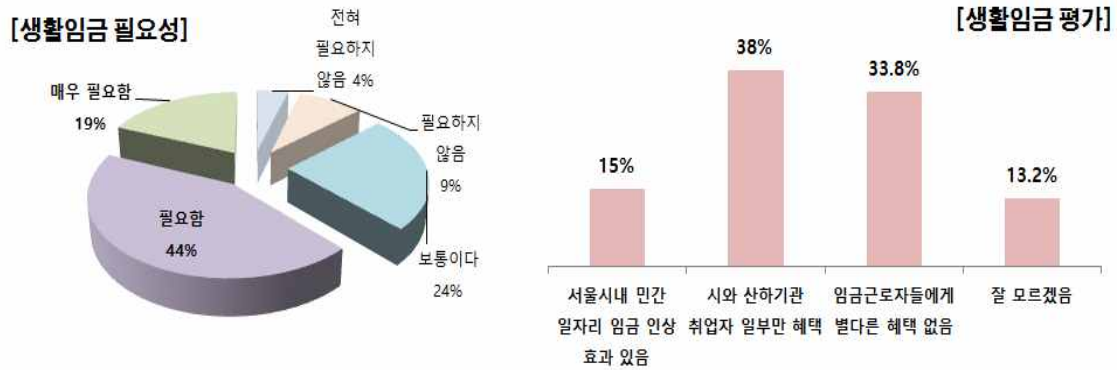

3. 서울시 생활임금 제도적 해결 과제, 발전 방향

○ **첫째,** 서울시 생활임금 정책효과성 및 전형(best practice) 수립 필요. 2016년 서울시 생활임금(7,145원, *2017년 8,197원*)은 서울지역 자치구(최소 6,934원, 최대 7,600원), 교육청(서울시 학교 7,145원)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의 생활임금 모델 구축과 여타 공공부문 확산은 우리나라 자치단체 전체의 기준(준거)이 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 내 룰 세팅 역할을 해야 함. 이런 이유로 서울시 생활임금의 다양한 정책적 모색과 확장 등은 지자체 노동정책으로서 매우 중요한 성과적 의미를 갖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생활임금의 적용 실효성과 사각지대 해소 및 운영방안 개성 수립이 필요함. 무엇보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시 조례와 정책(시 공표, 발표)과 맞물려 해당 기관, 사업장에 모두(all)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서울시 내 1차 적용대상 중에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일부 있고[7], 자치구의 경우 현재 직접고용 소속 근로자에서 간접고용이나 민간위탁 영역으로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함. 또한 현재의 생활임금위원회 운영(분기별 1회)과 구성의 다양성(여성위원 및 노동단체)과 전문성(임금 관련 연구정책 전문가 유경험자 등)이 반영되어야 함.

○ **둘째,** 서울시 생활임금의 민간영역 확산 노력과 고민 존재. 공공부문 생활임금 도입의 필요성은 노동계 못지않게 학계에서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음. 이는 현재 낮은 법정최저임금 수준(시급 6,030원, *2017년 6,470원*)으로는 기본적인 인간의 삶조차 영위하기 어렵다는 것이 반영된 취지임. 따라서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good employer)의 역할을 다하면서,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임. 이것은 지자체 생활임금 도입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일정하게 전제로 하고 있음.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생활임금 필요성(63%)이 3분의 2가량 됨에도, 민간부문 확산 효과(15%)보다 공공부문 한정 효과(71.8%)가 더 많았던 이유로 판단됨.

---

7) 생활임금이 각 기관(조직)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 인상이 평가대상 임금 인상율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 인상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평가지침을 개정하고 서울시 자체 투자출연기관 평가기준도 개정하여,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여야 함. 또한,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여부를 기관과 부서의 '성과평가'에 좀 더 강하게 반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 기준 충족을 위한 임금인상액 등 정책준수에 따른 인상분 제외(2017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평가편람)

△대학(성신여대, 한성대)과 업무협약(MOU) 체결(성북구)
△관내 기업, 학교,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은평구, 동작구)
△대학, 은행, 병원 등에 홍보 및 협의 추진(광주 광산구)
△주요 기업 및 협회 조직, 강소기업과 업무협약(MOU) 체결(서울시)
△생활임금제 신고 센터 설치(서울시)

- 그러나 현재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확산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형태를 제외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움. 현재 대략 민간 확산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은 3개 정도로 요약(지역 MOU, 설명회 및 홍보, 사업비 지원)되며 서울시나 여타 지자체들도 이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워낙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저임금에서 민간부문 생활임금 적용 시 적용 금액과 대상(직접고용 기간제 ↔ 시간제 ↔ 간접고용 파견 및 용역 등)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있음.[8] 제한적으로 서울시 및 각 자치구들은 기업 인증, MOU와 병행하여, 행정조직 별 다양한 사업 지원제도(서울시 주관 행사와 축제, 영화제 등)에 서울시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그림 4-6〕 영국 런던 민간 생활임금재단 인증제도 운영 사례(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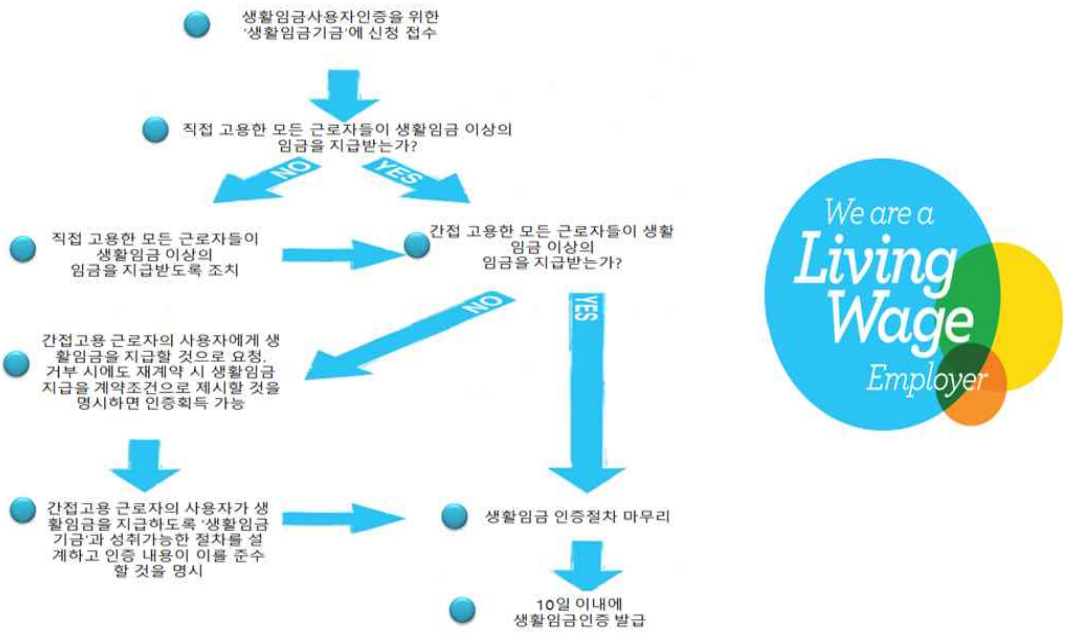

자료: Living Wage Foundation 홈페이지(김유선·김종진·박용철·채준호·곽상신·이주환, 2015 재인용)

8) 현재 서울지역 민간 아르바이트 시급(2016년 1/4분기 알바천국 원자료 분석 시급 6,686원)은 서울시 생활임금에 비해 낮은 상황임. 물론 서울시 생활임금 구성(기본급+식대+교통비)이 민간의 단순 기본 시급과 차이가 있으나, 일상의 임금 체감도로 볼 때 서울시라는 공공부문과 민간의 인식 차이는 존재함. 따라서 향후 서울시 생활임금의 산입 기준을 어떻게 할지도 중장기적으로 모색될 부분임.

○ **셋째**, 서울시 생활임금제의 중장기적 운영방향 검토 모색. 영국에서 생활임금이 법제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도 생활임금 관련 유관 법률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제도화될 개연성이 높음.[9] 결국 지자체 생활임금이 현재보다 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도 중장기적인 생활임금 확산과 발전방향을 위한 모색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이제는 서울시 및 각 자치구별 생활임금 통일적 기준 수립(산입 범위, 기준)과 제반 노동통계를 전담하는 기구(부서, 센터)를 서울연구원 같은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는 산하 부설 조직 중 '노동통계 연구실'(노동패널팀, 사업체패널팀, 지역통계연구팀)에서 주요 노동 관련 데이터(DATA)를 생성하여, 정책에 활용하고 공유하고 있음. 서울시도 일자리노동정책과(일자리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다양한 노동통계를 조사연구, 분석하는 기구를 통해,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생활임금에 기초 자료를 제공(Living Wage Calculator)하는 역할과 기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서울시민의 생활임금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캠페인 등의 공동 노력 필요. 2016년 5월 기준 서울시민들은 최저임금제도 어느 정도 인식(99.1%)하고 있던 반면, 서울시 생활임금 인식은 절반 수준(49.9%)이었음. 특히 사회적 임금 성격(social wages)인 두 임금제도 중 '최저임금'의 적극적 인식(49.3%)에 비해 '서울시 생활임금의 적극적 인식'(8.3%)은 41.6%p 격차가 확인됨.

- 따라서 서울시 홍보 가용 조직(시민봉사담당관, TBS 등)과 산하기관(투자출연, 출자기관) 그리고 자치구 및 민간 조직 등을 통해 서울시 생활임금을 좀 더 홍보하는 사업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면 영국 런던처럼 '서울시 생활임금 날'을 지정하여, '공공'(자치구, 교육청 등)과 '민간'(노동단체,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생활임금 홍보, 캠페인, 컨퍼런스 등을 기획하는 것을 고려 해봄직 함.[10] 이를 위해서는 2015년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등이

---

9) 2016년 20대 국회에서 김경협 의원의 최저임금법 발의(2016.6, 환노위 심사 중), 국가계약법 발의(2016.6, 기획재정위 심사 중), 지방계약법 발의(2016.6, 안정행정위 심사 중) 그리고 진선미 의원 지방계약법 발의(2016.8, 안정행위 심사 중)된 상태임.

10) 영국 런던은 생활임금 정책지지를 위해 런던시티즌이 설립한 생활임금재단(LWF, 2011.5)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위원회(LWC)를 통해 자문회의도 개최하며, 생활임금 기업인증제, 생활임금 주간 지정 활동 등 상대적으로 생활임금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음. 런던생활임금재단의 민간기업

업무협약 한 바와 같이 ‘서울지역 생활임금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총체적인 확산, 연구조사, 홍보 등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인증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9월 사이에만 약 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생활임금 인증을 받고 시행하고 있음.

<참고문헌>

권순원 · 김진 · 박용철 · 정경은(2013),『생활임금 활성화 및 확산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서울시 노원구 · 성북구.

김진희(2014), 「미국 생활임금 논의 재고찰 : 인간적 존엄을 보장하는 임금은 가능한가」,『미국학논집』, 46(3), 한국아메리카학회, pp.53~74.

김종진(2015), 「생활임금 논의 의미와 사회적 시사점 :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의 물음」, 《노동리뷰》,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pp.5~15.

김종진(2016), 「지방정부 노동정책으로서 생활임금 현황과 과제 : 서울지역 생활임금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생활임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6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토론회, 서울시 노동정책과 pp.47~79.

김종진·박용철·이정아·송민정(2016), 『아산시 중장기 노동정책 수립과 생활임금 실행방안 연구』, 아산시.

김유선·김종진·박용철·채준호·곽상신·이주환·홍관희(2015).「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세부실행방안 연구용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태일(2016), 「성북구 생활임금 추진 현황」, 『자치단체 생활임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6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토론회, 서울시 노동정책과 pp.27~43.

이남신·정흥준·남우근·이정아(2016).「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정희(2012), 「영국의 생활임금과 노동조합 재활성화」,『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pp.54~63.

정형옥 외(2016), 『여성 저임금근로자 실태분석 및 생활임금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최 붕 외(2016), 「서울시 생활임금제 시행성과 모니터링」, 『자치단체 생활임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6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토론회, 서울시 노동정책과 pp.27~43.

황선자 · 이철(2008),『생활임금운동과 노동조합』,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Adams, S. and D. Neumark(2005), "Living wage effects : New and improved evidence",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9(1), pp.80~102.

Ciscel, D. H.(2002), *What is a Living Wage for Memphis?*, 2002 Editions, Memphis, TN : The University of Memphis Center for Research on Women(CROW).

EPI(2000), Living Wage Policy. Economic Policy Institute.

Fairris, D(2005), "The impact of living wages on employers : A control group analysis of the Los Angeles ordinance", *Industrial Relations*, 44, pp.84~105.

GLA Economics(2009), *An Independent Study of the Business Benefits of Implementing a Living Wage Policy in London*, London: Greater London Authority.

Greater London Authority(2013), *A Fairer London : The 2013 Living Wage in London*, London : GLA Economics Publications.

Lester, T.(2011), "The impact of living wage laws on urban economic development patterns and the local business climate: Evidence from California cities",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25(3), pp.237~254.

Mayor of London(2004), *The London Plan : Spatial development strategy for Greater*

London, London : Greater London Authority.

Neumark, D.(2002), *How Living Wage Laws Affect Low-wage Workers and Low-income Families*, San Francisco, CA :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Pollin, Robert(2005), "Evaluating living-wage laws in the united States: Good intentions and economic reality in conflict?",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9.

Shelburne, R.(1999), *The History and Theory of the Living Wage Concept*, U.S. Department of Labor : Washington, DC.

Swarts, H. and I. Vasi(2011), "Which U.S. cities adopt living wage ordinances? Predictors of adoption of a new labor tactic, 1994-2006", *Urban Affairs Review* 47(6), pp.743~774.

Tilly, C.(2004), "Living Wage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 Dynamics of a Growing Movement", in M. Kousis and C. Tilly(eds.), *Economic and Political Conten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Boulder : Paradigm, pp.43~60.

Wills, J. and Brian Linneker(2012),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London Living Wage*. London : Trust for London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